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88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leejy10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표시·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3조2의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제목
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다.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	250	375	500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	3호			
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위법·부당한 표시·광고 임을 알리는 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표시·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u> <u>1. 법 제13조2의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제목</u> <u>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u>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다.</u>

<신 설>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광고 모

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생략)	(생략)	(생략)
가. ~ 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라. 법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 3호	250	375	500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